

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(추가)신청서

사 건 2000가합000 손해배상(기)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(추가)합니다.

변경한 청구취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변경한 청구워인

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% 발생하였는바, 이에 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그 금액으로는 금 ○○○원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첨 부 서 류



- 1. 서울지방법원 위자료산정기준안내문(노동능력상실시) 1통
- 1. 신청서부본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			or k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	제출기간	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변론및
			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함 때까지)
			[인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			•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
			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	인지액 : ㅇㅇㅇ원(☞산정방법),		
비 용	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		
	※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		
기 타	·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, 종국판결에 대한		
	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(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5096 판결).		
	·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		
	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		
	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		
	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		
	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(대법원		
	2003. 1. 10. 선고 2002다41435 판결, 1994. 10. 14. 선고 94다10153 판결).		
	·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		
	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,		
	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		
	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		
	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,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		
	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		
	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44416 판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